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
- **효력발생일** : 2015. 5. 18.
- **정정 사유** :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- **정정 내용**

| 항 목  | 정 정 전                   | 정 정 후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  | 2015.2.28               | <u>2015.4.30</u> 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br>다. 모자형 구조   |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<br>자투자신탁 추가 |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<br/>금 펀드[주식]</u> 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<br>사항<br>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<br>자투자신탁 추가 |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<br/>금 펀드[주식]</u>  |
| 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<br>관한 사항<br>가. 정기보고서<br>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<br>제출 등      | 회계감사관련<br>내용 기재         | <p><b>③회계감사</b><br/> <u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</li> <li>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</li> </ul> |

|  |  |  |
|--|--|--|
|  |  | <u>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</u><br>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|
|--|--|--|